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상한 복지정책실장)

1. 제안이유

- 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학대현장에서 긴급분리하여 임시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임
- 나. 기존에 연령 구분 없이 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인장애인 전용 쉼터로 운영하고, 신규로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남아·여아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함

라. 쉽터 입소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인권 감수성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 특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 및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5년 (2022.11.01. ~ 2027.10.31.)
- 위탁사무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쉽터」 2개소 통합 운영·관리
 - 긴급보호 :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치료지원 :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교육지원 :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사후관리 :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모니터링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쉽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쉽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관리·운영의 위탁)

○ 필요성

-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21.3.30.)으로 장애아동 학대사례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기존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장애아동 수용 여건이 부족하며, 피해장애인 쉼터는 연령 구분없이 운영되어 입소 장애아동 2차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됨
- 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권 감수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특성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쉼터 운영 민간위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5의4]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3. 운영기준 : 입소정원 4명(남녀 전용), 주 7일, 24시간 운영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221백만원) 확보 협의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장애인복지법」 개정('21년 7월)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신설·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동의안의 추진배경

- 학대 피해장애아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아동 학대 대책에서도, 장애인학대 정책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음. 1)
- 이와 관련해 '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음.
 - 최근 3년간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중 약 10~15%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장애아동은 성인 장애

1) 서해정·이동석·김경희·송기호(201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연구 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장애인 쉽터 혹은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쉽터에 입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²⁾

<표> 장애인복지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장애인복지법 (‘21.7.27 일부 개정)
<p>제59조의13(피해장애인 <u>쉽터</u>) ① (생략) <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u>쉽터</u>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9조의13(피해장애인 <u>쉽터</u>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장애아동전용 <u>쉽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쉽터</u>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전용 <u>쉽터</u>-----.</p>

-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쉽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하였고, 서울시³⁾는 이에 선정되어 2022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쉽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1.4.).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3) 지방자치단체 공모는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 외에도 부산, 경기 총 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

나. 동의안의 주요 내용

- 본 위탁사무는 시설형으로 분류되며, 서울시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에 맡길 계획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설형 위탁은 행정재산 (시 소유시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을 수반하게 됨.
-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무를 통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긴급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장애아동의 정서안정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탁사무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 통합 운영·관리
 - (긴급보호)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치료지원) 입소 장애아동의 심리치료, 재활치료 등 상시 의료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정서안정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사후관리)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퇴소 장애아동 지속 모니터링

- 본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게 되며, 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설치비를 지원하게 됨.

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라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3 종합의견

- 동 위탁사무는 서울시의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에게 가해자와 즉시 분리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소 장애아동의 장애를 고려한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단,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해당 사무 운영에 있어 장애아동은 재학대와 방임의 비중이 높고, 부모에 의한 학대나 영유아 학대가 비장애아동에 비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성⁵⁾ 등을 고려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발굴체계 개선 등을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직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해당 사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원혜옥·강정은·마한얼·김재희(2022).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의 규정에 의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학대현장에서 긴급분리하여 임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임
- 나. 기존에 연령 구분 없이 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인 장애인 전용 쉼터로 운영하고, 신규로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남아·여아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라. 쉼터 입소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인권 감수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 특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 및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5년(2022.11.01. ~ 2027.10.31.)
- 위탁사무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 통합 운영·관리
 - 긴급보호 :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치료지원 :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교육지원 :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사후관리 :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모니터링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식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2.7.26.)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요성
 -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21.3.30.)으로 장애아동 학대사례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기존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장애아동 수용 여건이 부족하며, 피해장애인 쉼터는 연령 구분없이 운영되어 입소 장애아동 2차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됨

-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권 감수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특성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센터 운영 민간위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센터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제43조7(피해장애인 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센터 및 피해장애아동 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5의4]

피해장애인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피해장애아동 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3. 운영기준 : 입소정원 4명(남녀 전용), 주 7일, 24시간 운영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221백만원) 확보 협의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박소영 (☎ 2133-7362)